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1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김경협·박영순·김영호

윤재갑 · 정일영 · 이성만

양이원영 • 이상직 • 김민철

아 김경만 · 김승원

박상혁 • 이인영 • 송갑석

박성준 • 황운하 • 윤미향

김한정 · 남인순 · 김승남

전혜숙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 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법적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 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 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 만큼의 이익 을 부당하게 취하게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 방식이 지 난 2020년 6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에도 개정 전 특허법과 유사한 방식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디자인권자 및 그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

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약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 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 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 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 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 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 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 한 <u>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u>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 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다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 할 수 있다. 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 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 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 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 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디자 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 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 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 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 <u>량에서 실제 판매</u>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 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

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